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87

2017. 11. 2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입안내용**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내용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광진구 광장동 318-6일대	-	증)6,890	6,890	-	체육시설 지하 중복결정

□ 입안사유

○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및 공공시설물 보관을 위한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3.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4. 주민 의견청취

○ 열람기간 : 2016. 8. 5. ~ 8. 22.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공고게재 : 일간신문(동아일보, 문화일보), 광진구청 홈페이지

○ 의견청취결과 : OO아파트 입주자 등 2건

구 분	제 출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아파트 입주자 일동	• 해당지역은 아파트 밀집단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대형 폐기물 트럭에 의한 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현격히 저하되고 아파트 가격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 우려 • 체육공원과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한 곳에 혐오시설 유치는 도시계획 형평에 맞지 않음	• 폐기물 수거 후 부지내로 이동시 밀폐형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유해물질에 의한 분진 없음 • 현재 상부에 이용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 • 주민설명회, 시설물 견학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되게 하겠음	미반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상수원보호구역과 주거 밀집지역인 이곳에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이란 명목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한강을 오염시키고 청정주거지역을 악취, 매연지역으로 만들고 있음 • 동 부지는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향후 지하를 포함한 입체적인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유일한 부지로 지하 환승주차장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 지하의 활용이 불가능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하다는 서울시 체육정책과 의견을 무시한채 건립 강행은 이해되지 않음 • 2014.7월부터 철통같은 보완과 비밀유지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선정과정이나 주변 환경영향평가 등에 주민의견을 묻지도 않는 폐쇄행정,	• 본 대상지는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제한지역)로 지정되어 본 사업과는 해당사항이 없음 •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대부분이 청소 및 세차용수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법적기준치로 처리 후 중랑물재생센터로 이송후 방류 • 이용차량은 일 약 40대로 순차적으로 진출입을 계획하고 있어 매연 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체육공원화 사업시 해당시설의 대체부지 확보가 불가한 실정으로 해당부지 지하에 계획한 사항이며 관련부서인 체육정책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시행중임 • 광진구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미반영

	편의주의 행정을 시행 • 2014.7월부터 철통같은 보완과 비밀유지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선정과정이나 주변 환경영향평가 등에 주민의견을 묻지도 않는 폐쇄행정, 편의주의 행정을 시행	있는 여유부지가 전무한 상태이며 타 지자체 입지 검토를 위하여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의 반대가 있었고 주민들에게 본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은 아니며, 계획내용이 있어야지만 주민협의 등을 할 수 있어 '16.9월에서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임	

5. 관련부서 검토의견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체육정책과	• 동 부지는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향후 지하를 포함한 입체적인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유일한 부지로서 • 지하 환승주차장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하의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금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불가	• 서울시에서 해당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 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추진	부분 반영
시설계획과	• 체육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시 각 시설별 확장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설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주관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시설별 확장가능성 검토 및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반영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수직적 중복결정 적용기준을 감안하여 적정성 검토 필요 • 다수의 주민유발시설이 기 조성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과 연접하여 있는 바, 시민이용 및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중복결정 적정성 검토 및 우리시의 해당부지 활용계획 등 선행검토 필요	• 관련규정 상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 및 수직적 중복결정시 사안별 적정성 판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으로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본 사업을 진행하겠음 • 본 시설은 지하부에 설치하여 주변에서 확인이 어렵고, 악취 등의 문제는 설계기준보다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겠음	반영
도시철도공	• 5호선 지하 본선구조물에 근접한	• 실시계획인가 전 제반사항에	반영

사	구간으로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시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협의 후 시행	대해 사전협의하겠음	
광진구 교통행정과	• 사업지 진입도로 개설시 보행자 통로 확보	• 현재 구민체육센터 접근 보행로를 활용하여 시설물로 진출입할 계획이며 시설물상부를 기존 구민체육센터 레벨과 동일하게 조성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반영
광진구 환경과	•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및 공공기관 BEMS, ESS설치 의무화 등	•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설치대상 해당시 관련사항을 이행하겠음	반영

6. 광진구의회 의견청취

○ 의견청취일 : 2016. 9. 3

○ 의견청취결과 : 가결

7.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개최일 : 2016. 9. 29

○ 자문결과 : 원안동의

8. 환경성 검토

○ 현재 사업부지에서 임시로 수행중인 대형폐기물 파쇄 및 적환시설을 지하화하여 광진구 자체 폐기물처리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조물 상부를 인공지반으로 계획하여 공원화하고 악취제거 및 집진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 따라서, 사업으로 인한 생태면적, 녹지훼손, 비오톱 등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9. 기 타

○ 재원조달계획

- 개략 사업비 : 394억원 (구비, 시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 ’14. 07. : 광진환경자원센터 건립방침(광진구)
- ’15. 02. : 광진환경자원센터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15. 12. :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계용역 착수
- ’16. 08. : 열람공고(8.5 ~ 8.22) 및 관련부서 협의
- ’16. 09. : 구의회 의견청취(가결)
- ’16. 09. : 주민설명회 개최
- ’16. 09.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동의)
- ’17. 04. : 개발방안 검토 1,2부시장 연석회의
  ·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후 추진
- ’17. 09. :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 조건부 동의)
  ·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결과와 연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추진
- ’17. 11.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신청(광진구→서울시)

8. 검토의견

□ 제출배경 및 목적

○ 이 의견청취안은 광진구 광장동 318-6번지 일대 체육시설부지 지하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6,890㎡)을 중복 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7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이는 광진구가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상에 위치한 적환시설과 공공시설물 등을 지하로 이전시키고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전처리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임.

- 광진구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체 폐기물처리시설[1]이 없는 구로서 1995년 분구 이전부터 현재까지 성동구의 송정적환장을 사용해 왔으나 최근 성동구가 사용중지를 요청해 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적환장) 설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상황인 것으로 파악됨.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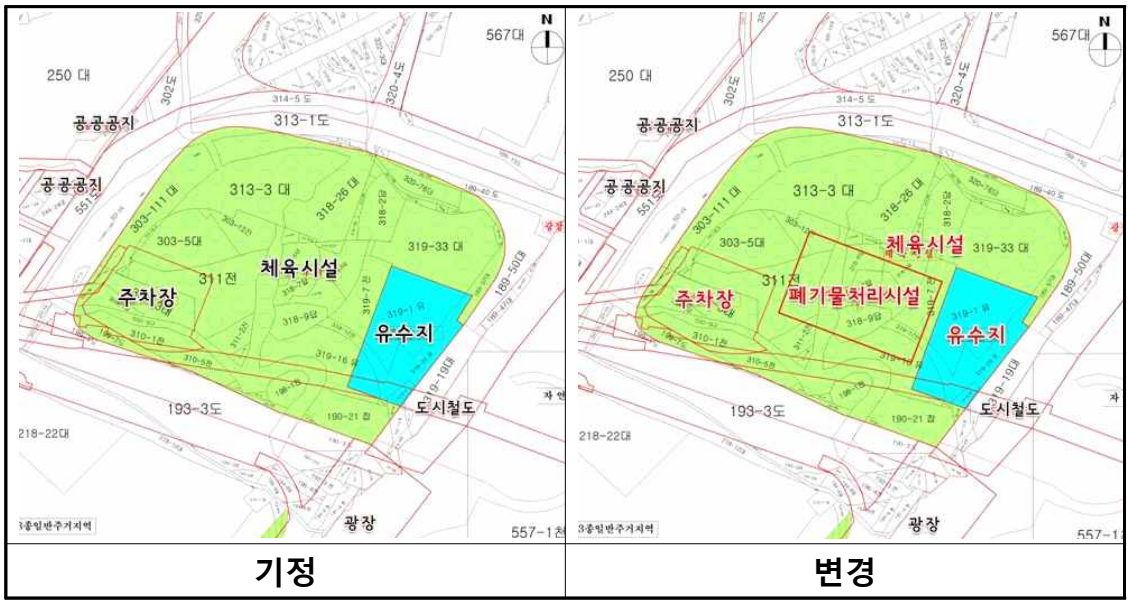

기정	변경

□ 대상지 현황

○ 중복결정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서 체육시설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나대지 상태로서 폐기물 임시 집하장 및 자재창고로 사용 중임. 대상지 북측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구

1) 폐기물처리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크게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로 구분됨(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붙임1 참조)

민체육센터 등이 2006년 건립되어 운영 중이며, 동측으로 유수지가 서측으로는 실시설계를 마친 광나루역 환승주차장이 접해 있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치·이용현황>

시설명		면적(㎡)	고시일	고시번호	설치 및 이용현황	비고
체육시설		50,916	1978.04.20	서울시고시 제170호	현재 지상부는 텃밭, 제설발진기지 건설자제보관소, 폐기물집하장, 해병대전우회가 사용중	청소년수련관·구민체육센터·라이브 홀 2006년 준공
중복결정	유수지	5,654.67	2007.01.25	서울시고시 제2007-19호	2007년 준공	**'광장 빗물펌프장'** 광장동 319 일대
	주차장	4,913	2009.10.22	광진구고시 제70호	실시설계 완료 마스터플랜 수립 후 추진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광장동 307-3 일대
	폐기물처리시설	6,890	-	(중복결정 추진중)	임시 집하장 및 자재창고로 사용중	**'광진환경자원센터'**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광장동 318-6 일대

○ 중복결정 대상지는 총 6,890㎡규모로서 시유지 9개 필지(4,490㎡)와 구유지 4필지(2,400㎡)로 구성되며, 체육시설 부지내 사유지는 지난 2014년 매입을 완료하였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토지소유 현황>

<위치도 및 현장사진>

□ 검토결과

○ 광진구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아차산 일대를 포함한 7개 부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용역[2]을 실시한 결과, 6개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현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지하에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입지선정을 완료한 상태임.

○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은 타시설과의 중복결정이 권고되는 시

2) 구청장 방침에 따라 '14.11월부터 3개월간 관내 7개 부지(광장동 318번지 일원, 중곡동 143-144, 중곡동 143-146, 구의동 3, 구의동 3-3, 구의동 3-10, 구의동 3-11)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분석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머지 6개소는 문화재 보존 및 고압전기설비 통과 등으로 인해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기타 관내에 시설 요구면적을 만족하는 부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설[3]로서, 관계규정상 체육시설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중복결정할 경우 기존시설의 본래 기능이 저해되거나 그 기능이 상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중복결정은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우리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운용기준**[4]을 두고 있는데, 이 기준에서는 수직적 중복결정의 경우 명확한 운용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사안별 적정성 판단**[5]을 기초로 수직적 중복결정의 가부(可否)를 결정하도록 하되, 기존시설 관리부서(기관)와의 협의하에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기존시설(체육시설) 관리부서인 서울시 체육정책과는 '16.8월 열람공고 당시 입체적 체육시설로의 개발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지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그러나 '17.4월 체육시설부지 개발방안 검토를 위해 개최된 1,2부시장 연석회의에서 서울시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체육정책과는 마스터플랜 수립 결과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이 추진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음.

- 이를 위해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는 '17.9월 '**광장동 체육시**

---

3)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3조제2항. (붙임 2 참조)

4)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 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 – 중복 · 입체적 · 공간적 범위결정 기준 –」 (행정2부시장 방침 제422호, 2010.12.30.) (붙임 2 참조)

5) 사안별 적정성 판단기준은 '시설간 상호 적합성', '물리적 설치 가능성', '개별법에 의한 설치 가능성'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본 건의 경우 이를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됨.

설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6]하였고, 이 용역은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음.

◈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사업개요**

○ 위　　치 : 광진구 광장동 318-6번지 일대
○ 규　　모 : 대지 6,890㎡(지하1~2층), 연면적 8,937㎡
○ 주요시설 : 생활쓰레기 압축 및 적환, 파쇄시설, 제설발진기지, 건설자재 등 공공시설물 보관, 청소차량 차고지
○ 건립비용 : 311억원 (특별교부금 140억원, 구비 171억원)
○ 추진경위
- `14.07. : 광진환경자원센터 건립방침 수립 (광진구)
- `15.02. : 광진환경자원센터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광진구)
- `16.08. : 주민열람공고, 관련부서 협의 및 구의회 의견청취 (가결)
- `16.09. : 주민설명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원안동의)
- ‘17.04. : 개발방안 검토 1,2부시장 연석회의
- ‘17.09. : 서울시 투자심사 (조건부 동의)
- ‘17.11.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신청 (광진구→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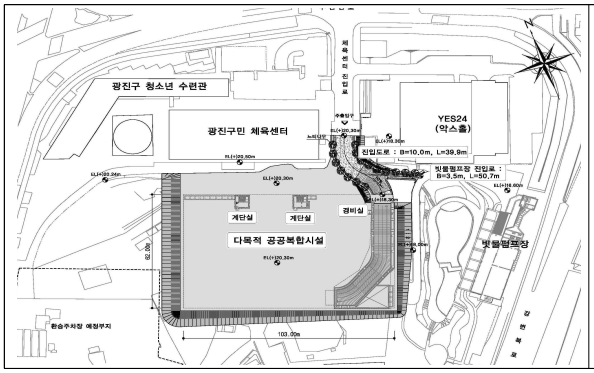

<시설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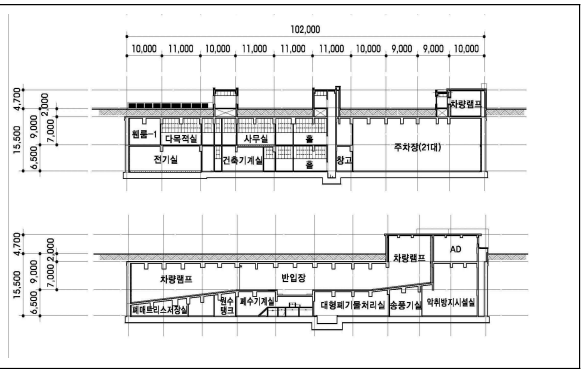

<단 면 도>

○ 이와같이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중복결정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절차적 타당성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17.9월 실시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활용 기본

6) 용역기간: 2017.9.6. ~ 2018.3.5., 용역비: 139백만원

구상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실시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되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실시설계를 마친 지하 주차장(광나루역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도 마스터플랜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하여 내년 착공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금번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의 적정성 논란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종합하면, 이 의견청취안은 현행 체육시설 부지내 지하공간 일부에 폐기물처리시설(적환장)을 중복결정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규칙 등 관련규정에 부합하고,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제시된 조건, 인접한 지하 주차장(광나루역 환승주차장)의 향후 사업추진 계획,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자치구 입지수요, 도심지역에서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의견청취안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사료됨.

○ 다만,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는 상황임[7]을 감안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소음, 분진, 악취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초기 단계부터 문제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노력[8]이 요구됨.

---

7)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은 매립 · 소각 · 음식물처리시설이 아니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이 아님.

8) 실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은 당초 열람공고(‘16.8.5~8.22) 시 제시된 면적보다 약 122㎡ 증가한 6,890㎡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악취저감시설의 처리용량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시설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악취저감시설 처리용량은 약 2배 증가(350㎡/min → 700㎡/min)한 것으로 파악됨.

【붙임 1】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원칙, 종류, 결정기준, 구조 및 설치기준

○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원칙**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제4편 제7장 제3절)

1. 시·군내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정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2. 처리장은 발생량의 분포에 따라 각 시설이 보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처리장은 무질서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입지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정하여진 장소에서만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시설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처리장안에 일정 폭의 수림대를 조성하여 주변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1.「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

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

활용단지를 조성하는 자

라.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기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3.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위에 담장·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4.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편리하며,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5.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상 저지대·저습지·협곡·계곡·공유수면매립예정지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고려할 것
6. 당해 시·군의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것
7.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의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의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분쇄시설에 한한다)로서 1일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8. 삭제 <2004.12.3.>
9. 재활용시설(제156조제3호 및 제4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은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한다)·일반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 **폐기물처리시설 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

1. 소각시설의 경우에는「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소각장의 폐열을 사용하는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3. 위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폐기물관리법」또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관계법령 및 서울시 방침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2.6.28.>

② 도시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8.9.5., 2012.6.28., 2012.10.31., 2016.2.12.>

[제목개정 2012.6.28.]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 - 중복·입체적·공간적 범위결정 기준 - (행정2부시장 방침 제422호, 2010.12.30.)

Ⅱ. 수직적 중복결정 운용기준

■ 적용원칙

- 모든 시설간 수직적 중복결정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시설 관리부서(기관)와 협의하여 결정
- 시설유형별로 수직적 중복결정 가부(可否)에 대한 기준을 운영하기 보다는 사안별 적정성 판단을 원칙

■ 적용기준

구 분	수직적 중복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간 상호 적합성	혐오시설 등 기존 시설의 본래 기능을 저해하거나 그 기능이 상충되는 경우 불허
물리적 설치 가능성	구조적 한계로 타 시설과 수직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불허
개별법에 의한 설치 가능성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인 경우 불허